##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60

발의연월일: 2021. 5. 7.

발 의 자: 구자근・박성민・조수진

김영식 · 김용판 · 김상훈

홍준표 · 김형동 · 곽상도

김태호 · 한무경 · 이채익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 각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미국은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하여 40%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음. 이에 국내 산업계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핵심이지만 세계시장에서 국내 반도체기업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기준 3.1%에 불과하며, 시스템반도체와 차량용반도체 등 유망 분야 기술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임. 그러나현재 반도체 분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3~12% 수준에 불과함.

현행법은 기업이 신성장·원천기술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음. 정부가지정한 신성장·원천기술에 메모리·시스템반도체 기술도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신성장·원천기술분야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성장·원천기술분야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비에 대하여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1)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40"으로, "100분의 25"를 "100분의 45"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0분의 10(코스닥 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를 "100분의 3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35)"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중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를 "100분의 30(중견기업은 100분의 35, 중소기업은 100분의 40)"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 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등)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
|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            | 세액공제) ①              |
| 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             |                      |
| 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            |                      |
| 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            |                      |
| ·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                      |
|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                      |
|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                      |
|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             |                      |
| 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            |                      |
| 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                      |
|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발생한 | <u>2023년 12월 31일</u> |
| 해당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해           |                      |
| 서만 적용한다.                    | <u>.</u>             |
| 1. 연구・인력개발비 중 대통령           | 1                    |
| 령으로 정하는 신성장・원천              |                      |
|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                      |
| (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ㆍ원            |                      |
| 천기술 연구개발비"라 한다)             |                      |
| 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에             |                      |
| 발생한 신성장·원천기술 연              |                      |
| 구개발비에 가목의 비율과 나             |                      |
| 목의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             |                      |

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기업유형에 따른 비율

- 1) 중소기업에 해당하는경우: 100분의 30
- 2)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견기업(이하 이 조에서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25]
- 나.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 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 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 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배수를 곱한 비율. 다만, 1 00분의 10(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5)을 한도로 한다.

| 가                |
|------------------|
| 1)               |
| <u>100분의 50</u>  |
| 2)100분의          |
| <u>40</u>        |
|                  |
|                  |
|                  |
|                  |
|                  |
|                  |
|                  |
| 100분의            |
| 45               |
| 나                |
|                  |
|                  |
|                  |
|                  |
|                  |
|                  |
| 1                |
| ·                |
| 기업의 경우 100분의 35) |
| <u> </u>         |
| •                |

- 2. · 3. (생략)
- ② ~ ⑥ (생 략)
-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생 략)
  - 2. 공제금액
    -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 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100 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 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 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

| ② ~ ⑥ (현행과 같음)   |
|------------------|
|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
| 2. 공제금액          |
| 가                |
|                  |
|                  |
|                  |
|                  |
|                  |
|                  |
|                  |
|                  |
|                  |

2 · 3 (현행과 같음)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중견기업은 100분의 5, 중소기업은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생 략)

② ~ ⑤ (생 략)

| 100분의     | 30(중견기 | 업은          |
|-----------|--------|-------------|
| 100분의 35, | 중소기업은  | <u>- 10</u> |
| 0분의 40)-  |        |             |
|           |        |             |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